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내용 및 결정개관

제2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고문 게재
2. 경 고
3. 주 의
4. 반론보도문 게재
5. 정정보도문 게재
6. 기 각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역일간신문
3. 지역주간신문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1. 공정성 및 형평성
2. 여론조사
3. 칼럼게재 제한
4. 상업광고 제한

제1장 심의내용 및 결정개관

제4회 5·3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회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 그리고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선거기사 심의의 핵심사항인 자체심의회 경우, 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심의실무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신문 26종, 지역일간신문 69종, 시사주간신문 21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등 390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공직선거법과 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을 과다하게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도성과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선거 실시 120일 전인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18차례 회의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회 안건 53건 중 6건(11.3%)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30건(56.6%)에 대해서는 경고, 그리고 17건(32.1%)에 대해서는 주의결정을 내렸다.

경고문 게재나 경고, 주의결정을 받은 53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31건(58.5%)
- ②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 10건(18.9%)
- ③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 : 1건(1.9%)
- ④상업광고 제한 위반 : 1건(1.9%)
- ⑤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 : 10건(18.9%)

위반건수를 매체별로 분류해보면,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5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7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22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33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7건, 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11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12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 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밖에 월간지 한 곳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1건 위배했다. <표 1>

자체심의회와는 별도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 등 피해당사자가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 시정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심의회는 모두 25건, 그리고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을 청구한 사례는 2건이었는데, 시정요구 심의회 경우 중앙일간지가 5건, 지역일간지 10건, 지역주간신문 10건이며, 반론보도청구회부심 심의회는 지역주간신문 1건과 월간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접수 시 안전심의에 앞서 시정요구인(청구인)과 피시정요구인(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전을 심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총 25건의 시정요구 신청을 심의한

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기각 4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15건은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되거나 언론사의 사과 등으로 심의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됐다. <표 2>

총 2건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의 경우 인용(반론보도문 게재) 1건의 결정이 있었으며, 1건은 기각결정됐다.

이번 지방선거 기사심의에 있어 자체심의 지적건수는 53건으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자체심의 지적건수 46건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2004년의 제17대 총선 때의 69건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번 선거의 기사심의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정요구심의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및 2004년 제17대 총선 때보다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시정요구심의는 모두 10건이었고, 제17대 총선 때는 9건이었다.

자체심의 의결현황

<표 1>

구 분 간 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 신문	중 앙	7	3	3	1				4	3	
	지 역	33	21	7			5	3	18	12	
지역주간신문		12	6			1	5	3	7	2	
월 간 지		1	1						1		
총 계		53 100%	31 58.5%	10 18.9%	1 1.9%	1 1.9%	10 18.9%	6 11.3%	30 56.6%	17 32.1%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표 2>

구 분 간 별 계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정정보도 등	사과문 게재	주의·경고 ·권고 등	기 타 (공정정보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기 각	취 하
일간 신문	중 앙	5	3			2				1	1	3
	지 역	10	8	1		1	1	1			1	7
지역주간신문		10	6		1	3			2	1	2	5
총 계		25 100%	17 68.0%	1 4.0%	1 4.0%	6 24.0%	1 4.0%	1 4.0%	2 8.0%	2 8.0%	4 16.0%	15 60.0%

제2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고문 게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의도성과 함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경고문 게재결정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결정사항이다. 그 이전까지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 유형으로는 선거법상 사과문, 정정보도문만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과문은 지난 199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정정보도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던 터라,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기사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주의 및 경고결정만 내려 왔었다. 그러나 주의 및 경고결정은 그 자체로 끝날 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총 6건의 경고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는데, 매체별로 보면 지역일간신문 2개사에 3건, 지역주간신문 3개사에 각 1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건, 여론조사 관련 위반이 1건이었다. 이들 가운데 아시아일보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2회의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표 3>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3	아시아일보	2006. 2. 14.	2면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2006자심9	종로저널	2006. 2. 13.	1면 5면 " "	남상해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神이 내리신 사람'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2006자심20	만연신문	2006. 2. 14. 2006. 3. 8.	2면 1면 5면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전형준 화·발·연회장 자서전 'CEO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 기념회 성황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직원연구원 위촉
2006자심38	시민일보	2006. 3. 29.	1면 3면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민생안정에 모든 것 걸여다"
2006자심50	양천신문	2006. 5. 8.	1면 2면	추재엽 현 구청장 재선임 출마 선언 추재엽구청장 5.31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선언全文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6	아시아일보	2006. 2. 3.	2면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2. 경 고

이번 5·31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53건의 기사 가운데 56.6%인 30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여타 결정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이다. 이러한 건수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경고결정이 12건(26.1%)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체별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각 18건, 7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일간신문이 4건, 월간지 1건이었다.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내려진 경고결정 2건도 모두 지역주간신문이었다.

이처럼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역지에 대한 경고결정이 높았던 것은 지역정서에 좌우된 이번 지방선거의 양상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지역신문들은 해당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후보나 정당을 편파적으로 부각시켜 불공정하게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체심의회에서 가장 많이 경고를 받은 신문은 서울지역 지역일간지인 시민일보로 경고결정 3건과 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경고문 게재결정 1건을 받았다.

자체심의를 통해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9건(63.3%)으로 가장 많고 ② '칼럼게재 제한 위반' 7건(23.3%) ③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건(6.7%),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 후보예정자를 여러 면에 걸쳐 집중 소개하면서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하는 경우
- 2) 선거기간 초반부터 특정 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양자대결구도로 보도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3) 선거판세와 관련한 여론조사내용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를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하는 경우
- 4)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편파적으로 부각하는 경우
- 5) 현직 의회회장 및 기초단체장으로 있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상 황과 향후 계획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경우
- 6) 특정 후보의 사진만을 편파적으로 게재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7)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전략을 소개하면서 선거홍보물의 컨셉 등을 홍보물의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8) 특정 후보의 선거활동 동향을 사진과 함께 편파적으로 보도하면서 주요 공약사항 등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우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및 제2조 '형평성'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표 5>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5〉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	시 민 일 보	2006. 2. 2. 2006. 2. 3. 2006. 2. 9.	3면 3면 4면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강금실 與 입당때 지지도 추락할 것"
2006자심2	데 일 리 줌	2006. 2. 13.	28면	글로벌감각 탁월한 '여의도 젠틀맨'
2006자심10	전 주 매 일	2006. 2. 15.	1면 2면 " 3면	김완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김시장, 전북농협 개혁안 제시 '전북도백' 건곤일척 승부 '불꽃점화' 김완주시장 고른 지지속 1위 달려
2006자심11	데 일 리 줌	2006. 2. 22.	9면	"청와대 용산이전, 민족 자존심 찾는일"
2006자심12	현 대 일 보	2006. 2. 22.	2면	"지방화시대 걸맞는 의정활동 노력하겠다"
2006자심13	전 민 일 보	2006. 2. 23.	6면	"기업 적극 유치 경제활성화 주력"
2006자심16	대 구 신 문	2006. 2. 24. ~28.	각 5면	선택 5·31 지방선거 D-96~92
2006자심18	전 국 매 일	2006. 2. 28.	1면 16면	국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교육·문화예술 키울 터 짜임새 있고 표정이 있는 야무진 도시
2006자심32	경 동 신 문	2006. 3. 16.	8면	京東인터뷰 - 광진구의회 추윤구의원 (중국 4동)
2006자심41	월 간 중 앙	2006년 3월호	246~ 251면	하림각 회장 남상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2006자심44	매 일 경 제	2006. 4. 8.	A21면	나는 더 큰 꿈을 따라 걸어 왔네
2006자심45	투데이뉴스	2006. 4. 12.	6면	"지역 발전 녹색도시 건설 앞장"
2006자심48	남 도 일 보	2006. 4. 21. 2006. 4. 26. 2006. 4. 27.	3면 1면 3면 " 1면	민주당 텃밭 '제2의 D' 로 위기의 민주당 구할 '구원투수' 나선다 "중앙당이 경쟁력 깎아내려" "우리 호남인들 똘똘 뭉쳐야" 박광태·박준영 '공동번영 상생협력' 선언문 발표
2006자심49	항 도 신 문	2006. 4. 12. 2006. 4. 28. 2006. 5. 5.	5면 5면 1면	'소리없이 강한' 정시장 민생 챙기기 동북아시대 "목포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 정종득시장, 지방선거 출마 공식선언
2006자심51	서 울 일 보	2006. 5. 16.	20면	점검/한나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박주원
2006자심52	경 인 매 일	2006. 5. 17.	3면	도민소득 3만불 '경제 도지사' 약속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53	울 산 매 일	2006. 5. 20.	3면	지방선거 현장 - 표심잡는 후보들
2006자심54	광 역 일 보	2006. 5. 20.	16면	빛속 민심잡기 발품
2006자심55	경기도민일보	2006. 4. 26. 2006. 5. 16. 2006. 5. 24.	각3면	"경기도의 애플탑 구상중" 화성 병점흥서 '애국심' 강조 김문수, 양평시장 유세

나. 여론조사 관련 위반

여론조사 관련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 보도'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번 심의를 통해 지적된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모두 11건으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10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는 3건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2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1건이었다. 나머지 여론조사 관련 위반기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결정이 7건, 경고문 게재결정이 1건이었다. <표 6, 7>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표 6>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6	수도권일보	2006. 3. 20.	3면	김문수의원 지지 '45.5%'
2006자심34	아시아일보	2006. 3. 27.	2면	"경선 패배해도 선대위원장 맡겠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 7>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56	중 앙 일 보	2006. 5. 30.	6면	서울·부산·충남·광주 유권자 3차 패널조사 - 충남 '박 대표 테러'에 가장 영향 받아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칼럼게재 제한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외부기고’ 규정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부분의 위반은 지난 17대 총선 이래 대부분 경고결정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예정자나 후보자의 칼럼은 주관적 판단이 주류인 칼럼의 특성상 선거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기간 중 후보나 후보예정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여 적발된 기사가 9건, 그리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외부기고문 게재로 적발된 기사가 1건 있어, 총 10건의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는 7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주의결정을 받았다. <표 8>

칼럼게재 제한 위반

<표 8>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5	거 창 신 문	2006. 2. 20.	9면	지사님 힘내세요!
2006자심28	전 북 일 보	2006. 3. 2.	18면	'재의 나라'에서 개혁의 불씨 지피다
2006자심29	종 로 신 문	2006. 3. 10.	7면	아쉬운 道德政治의 구현
2006자심30	부천자치신문	2006. 3. 11.	10면	실효성 없는 조세개혁
2006자심31	시 민 일 보	2006. 3. 17. 2006. 3. 21.	각 5면	요덕, 충격과 감동의 휴먼 드라마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2006자심36	시 민 일 보	2006. 3. 27.	5면	천막정신이 한나라당의 살길이다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2006자심43	종 로 신 문	2006. 3. 22. 2006. 3. 29.	7면 6면 7면	5·31지방선거, 종로 체통살려야 서울 돔구장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하자 지역갈등 해소가 국가발전의 첩경

라. 상업광고의 제한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부분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조항들은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한 지역주간신문만이 이를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표 9>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9>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37	새여수신문	2006. 3. 13.	1면	박주선과 호남 - 시련에서 영광으로

자체심의 외에 시정요구심의에서도 2건의 경고결정이 나왔다. 지역주간신문인 금천뉴스는 금천구청장선거와 관련해 현 구청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구정 계획 등을 2주 연속 2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정요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고결정을 내렸다.

또 역시 지역주간신문인 보성다향신문에 대해서도 전남 보성군의회 후보예정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3.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53건의 기사 가운데 17건(32.1%)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주의결정은 경고결정 30건(56.6%)보다 적은 수치로, 이는 경고보다 주의결정이 많았던(73.9%)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대조적이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3건, 지역일간신문이 12건, 그리고 지역주간신문이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17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각각 7건, 그리고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3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7건 모두 지역일간지 및 지역주간신문이었다. 이들 지역지는 특정 후보예정자 및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들로 인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내용들은 대부분 후보등록이나 출마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공직퇴임 등의 시기에 맞춰 후보예정자를 후보성이 농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들이었다. 전북일보의 경우 기초단체장으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특정 예비후보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그의 재임 중 치적과 출마의지 등을 소개해 두 차례 모두 주의결정을 받았다. <표 10>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0>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7	경 상 일 보	2006. 2. 28.	6면	“학수고대하던 학위받자 울컥”
2006자심23	중 도 일 보	2006. 3. 4.	3면	박성호부시장 한나라 후보 등록
		2006. 3. 7.	2면	박성호 대전 정무부시장 퇴임
		2006. 3. 7.	3면	“경쟁력 있다” - “검증 안돼” 상반
			“	“50년 인생에 홀로서기 나서”
2006자심24	전 북 일 보	2006. 3. 7.	“	악연인가 운명인가
			5면	“8년동안 전주와 후회없는 사랑 나눴죠”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5	중 도 일 보	2006. 3. 14.	1면	심대평 지사직 11년 마감
			3면	정치인 심대평 “地選 필승”
			”	공직생활 40년 ... 도지사만 4차례
			”	중심당 전념위해 사퇴결심.
			4면	‘도청’ 마무리 못해 아쉬워
			”	행정도시 건설 확정 ‘성장’ 이끌어
				심지사 사퇴 ‘나를 따르라’
2006자심33	부 안 저 널	2006. 3. 15.	3면	전국 최고의 자치제로 급부상하는 부안!
2006자심39	전 북 일 보	2006. 3. 30.	5면	“산골오지에 월드시티 희망 심고 떠나 뿌듯”
2006자심40	전북연합신문	2006. 3. 31.	4면	모두가 잘사는 새 임실 만들기 ‘총력’

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모두 7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신문이 3건, 지역일간신문이 4건이었다. 이들 기사는 여론조사보도요건 중 다른 요건은 대부분 충족했으나 표본오차율을 적시하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일간신문들 가운데는 ‘2파전 압축’이나 ‘김○○ 1위’ 식의, 불공정한 제목을 단 여론조사관련 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도 있었다. <표 11>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1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4	한 국 일 보	2006. 1. 31.	3면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2006자심5	중 부 일 보	2006. 2. 1.	3면	‘김문수-정종훈’ 후보 지지
2006자심7	내 일 신 문	2006. 2. 8.	2면	광주·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2006자심8	내 일 신 문	2006. 2. 13.	2면	한나라 예비대의원 마음은 맹형규
2006자심14	아시 아일 보	2006. 2. 15.	2면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2006자심21	광 역 일 보	2006. 3. 1.	2면	UBC 5·31 기초단체장 선호도 조사
2006자심27	아시 아일 보	2006. 3. 20.	1면	경기지사 가상대결, 김문수 1위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지역일간신문에서 2건, 지역주간신문에서 1건이 칼럼게재제한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기사들은 모두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이었다. 이들 칼럼은 선거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결정을 받았다.〈표 12〉

칼럼 게재 제한 위반

〈표 12〉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2	경 기 신 문	2006. 3. 7.	15면	성추행과 골프
2006자심35	전 남 매 일	2006. 3. 22.	15면	'지방재정평가' 조정 필요
2006자심46	순천시민의신문	2006. 4. 12.	6면	순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이밖에 시정요구신청에 대한 심의에서도 2건의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가 경기도 고양시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2개 정당 후보예정자만 부각보도하고 나머지 후보예정자들은 단순 소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또 지역주간신문인 김천신문에 대해서도 김천시의회원 선거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만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4.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 게재결정은 시정요구심의와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시정요구심의의 경우, 인천일보가 2월 17일자에서 이원복 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의 선거출마와 관련, “이원복 위원장의 시장출마선언이 불공정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논란에 싸여 있으며, 이원복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타 후보들이 불공정경선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원복 후보예정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시정요구 신청을 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게재는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자의 주관적 추측에 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론보도 게재결정을 내렸다.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경우, 장성군민신문이 4월 25일자에서 고일갑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거액의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축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국가정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남도당은 고 후보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장성군수 예비후보자는 해당기사가 언론사의 일방적 주장만 신고 있다며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하였다.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분을 받아들여 “연이은 구제역파동으로 가공육 판로가 막혀 공장가동이 불가능했으며, 특히 2004년도 구제역청정지역은 제주도뿐으로 여타 지역에서는 육가공을 수출할 수가 없었고, 전남도당은 이와 무관하게 고씨를 장성군수 후보공천자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하였다.

5. 정정보도문 게재

시민일보는 4월 18일자에서 “서울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회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피해자 측에서는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며 특정후보를 부각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사과문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일보의 보도가 오보였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하였다.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한 것은 사죄광고 게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1년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 기 각

25건의 시정요구심의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4건이었다.

경향신문이 5월 3일자 6면에 『선택 5·31』 지방선거 열전지대 - 대구』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후보의 사진과 관련 기사를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후보와 여타 후보들이 선거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예정자가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강원도민일보는 4월 26일자 5면에 『심 전시장 출마땀 표심 분산. 우세 김 지사 영향 받을 수도』 제하의 기사 및 ‘거꾸로 보기’ 코너의 기사에서 “유 전의원은 도내 당 조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타 후보들과 열세...”로 보도한 데 대해 유승규 국민중심당 강원도지사 후보예정자가 시정을 요구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사가 특정선거의 후보예정자 모두를 다루는 판세분석보도 및 소개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와 지지도 순위, 유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차별하여 보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후보예정자가 여타 후보예정자에 비해 다소 부각 보도된 경우라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하에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또한 지역주간신문인 영광21이 5월 18일자에 전남 영광 군수후보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자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표본에서 배제되어 여론을 호도한 불공정한 보도행위를 했으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영광21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여론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연령별 분류에서 50대 이상 490명이 기사에서 표기된 50대 490명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가 ‘50대 이상’을 ‘50대’로 단순 오기한 것으로 판단,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후보 예정자인 경기도 부천시장이 신청한 주간 부천자치신문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기각되었다. 부천시장은 부천자치신문 4월 1일자와 8일자에 ‘부천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의 명의로 실린 ‘부천시장이 부천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는 요지의 각 의견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사의 범위에는 일반 기사와 함께 광고도 포함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부천시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로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과 광고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인 2005년 6월 4일부터 계속 게재되어 온 점, 그리고 광고문안에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화장장 건립반대’에 초점을 맞춘 의견광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 선거기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제3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의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총 390종으로, 중앙일간신문 26종, 지역일간신문 69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지 13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이었다.

이 중 중앙일간신문 5종, 지역일간신문 22종, 지역주간신문 11종, 월간지 1종 등 모두 39종이 이번 선거기사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법규와 규정을 위반해 주의·경고·경고문게재 등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비율은 10.1%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9.2%,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8.9%보다 높았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6개 매체 중 5개 매체에서 7건이 지적되어 주의 3건, 경고 4건의 결정을 받은바,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19.3%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3건, 그리고 '여론조사결과보도 금지 위반'이 1건이었다.

지역일간신문은 심의대상 69개 매체 중 22개 매체에서 33건이 지적되어 경고문게재 3건, 경고 18건, 주의 12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31.9%였다. 위반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7건, 그리고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은 265개 매체 중 11개 매체에서 12건이 지적되어 경고문게재 3건, 경고 7건, 주의 2건의 결정을 받았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4.2%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그리고 월간지 7개 매체 중 1개 매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1건이 지적(14.3%)되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신문은 지역일간지인 아시아일보로 모두 5건을 지적받았다. <표 13>

매체별 위반 현황

<표 13>

구 분 간 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중앙일 간 지	내 일 신 문	2		2						2
	데 일 리 줌	2	2						2	
	매 일 경 제	1	1						1	
	중 앙 일 보	1			1				1	
	한 국 일 보	1		1						1
	소 계	7	3	3	1				4	3
지 역 일 간 신 문	경기도민일보	1	1						1	
	경 기 신 문	1				1				1
	경 상 일 보	1	1							1
	경 인 매 일	1	1						1	
	광 역 일 보	2	1	1					1	1
	남 도 일 보	1	1						1	
	대 구 신 문	1	1						1	
	서 울 일 보	1	1						1	
	수도권일보	1		1					1	

구 분 간 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지 역 일 간 신 문	서민일보	4	2				2	1	3	
	아시아일보	5	1	4				2	1	2
	울산매일	1	1						1	
	전국매일	1	1						1	
	전남매일	1					1			1
	전민일보	1	1						1	
	전북연합신문	1	1							1
	전북일보	3	2				1		1	2
	전주매일	1	1						1	
	중도일보	2	2							2
	중부일보	1		1						1
	투데이뉴스	1	1						1	
	현대일보	1	1						1	
	소 계	33	21	7			5	3	18	12
지 역 주 간 신 문	거창신문	1					1		1	
	경동신문	1	1						1	
	만연신문	1	1					1		
	부안저널	1	1							1
	부천자치신문	1					1		1	
	새여수신문	1							1	
	순천시민의신문	1				1	1			1
	양천신문	1	1					1		
	종로신문	2					2		2	
	종로저널	1	1					1		
	향도신문	1	1						1	
	소 계	12	6			1	5	3	7	2
월 간 지	월간중앙	1	1						1	
	소 계	1	1						1	
총 계		53 100%	31 58.5%	10 18.9%	1 1.9%	1 1.9%	10 18.9%	6 11.3%	30 56.6%	17 32.1%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은 종합일간지 3개와 경제지 1개, 무료일간지 1개 등 5개 매체가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 4건(57.1%)을, 공정성 및 형평성 관련 보도로 3건(42.9%)을 위반해 경고 및 주의결정을 받았다.

두 번 이상 위반한 매체는 내일신문과 무료일간지인 데일리즘으로, 내일신문은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의 선거구도와 판세 및 한나라당 내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표본오차를 미기재하는 등 여론조사보도요건 조항을 두 번이나 위반해 각각 주의결정을 받았다.

데일리즘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학·경력 및 출마의 변, 공약사항 등을 사진과 함께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하여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해 두 번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도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5월 30일자에 보도,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상의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부분을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역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 주의결정을 받은 한국일보는 1월 31일자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자의 우세 현상을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도하면서 보도준수사항인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다.

2. 지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위반사례는 69개 대상매체 중 31.9%인 22개 매체에서 모두 33건을 위반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7건(21.2%), ‘칼럼게재 제한 위반’ 5건(15.2%)의 순이었다.

이 같은 위반매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경고문게재 3건(9.1%), 경고 18건(54.5%), 주의 12건(36.4%)이었다.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신문은 아시아일보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4건 및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이었다. 아시아일보는 이 같은 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인 경고문게재 2번과 경고 1번, 주의 2번을 받았다. 아시아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가 성남시 문화예술품을 10~20년간 앞당겨 고급문화예술품을 접하게 만들었다는 등 그의 지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 등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또한 이 신문은 역시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을 미기재하는 등 보도요건을 미충족한 것 외에 객관성이 결여된 표본과 비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를 보도한 것 등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두 번째로 지적을 많이 받은 신문은 시민일보로, 모두 4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각각 2건으로 경고문 게재결정 1건과 경고결정 3건이 내려졌다.

지역신문의 전반적인 위반유형은 대부분 특정후보를 박스기사나 인터뷰기사, 그리고 보도요건이 미비된 여론조사 기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게 부각시킨 것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폄하하거나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보도는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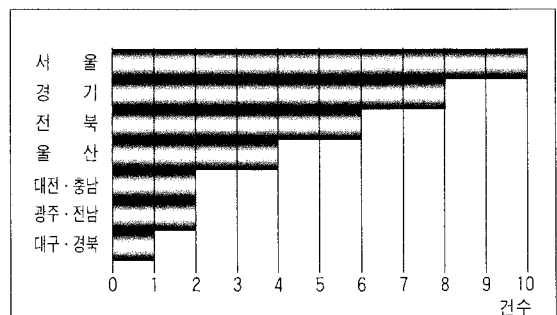
지역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서울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8건, 전북지역 6건, 울산지역이 4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지역이 각각 2건, 대구·경북지역이 1건이었다. 인천, 강원 및 경남, 충북, 제주지역은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 대구·경북지역의 신문들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은 1건이었다. <도표 1>

지역일간신문의 위반내용 중 특이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일보는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특정정당의 현직

발행지역별 위반 현황

<도표 1>



시장이 재출마를 선언한 것을 동일자 신문 1면과 2면, 3면에 공약사항 등과 함께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한편, 지역의 선거판세를 보도함에 있어 그 후보예정자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해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현저하게 갖추지 않아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특정정당 의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명칼럼을 연속적으로 전 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남도일보는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 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와 함께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사진들과 함께 수일에 걸쳐 집중 보도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울산매일은 후보자들의 선거활동 동향을 다루면서 전체 후보자들 중 특정정당 소속 후보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의 거리유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황 등을 현장 사진과 함께 편향적으로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중도일보는 특정정당의 공동대표가 선거지원을 위해 광역단체장을 사퇴한 것과 관련, 1면을 비롯해 3개면에 걸쳐 6개의 스트레이트 및 박스기사로 부각 보도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3. 지역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은 대상매체 265개 중 4.2%인 11개 매체에서 모두 12건이 지적되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50.0%),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41.7%), 그리고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8.3%)이었다.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고문게재 3건(25.0%), 경고 7건(58.3%), 주의 2건(16.7%)의 결정을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4개 매체에서 5건이 지적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남지역 4건,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각각 1건이었다.

위반 건수들은 유형상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그의 경력·인생관 등을 다룬 특집기사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종로저널의 경우 1면에 해당지역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크게 다루는 한편으로 5면에 2개의 특집 기사를 통해 이 후보예정자를 크게 부각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만연신문은 전남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각종 동향을 2회에 걸쳐 3개면에 우호적으로 집중 보도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양천신문은 양천구청장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과 관련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1면에 보도하는 한편, 2면에 비상식적으로 이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全文을 게재해 역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함께 칼럼게재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종로신문의 경우 특정정당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해 두 차례 경고결정을 받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은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거창신문은 현 광역단체장으로 선거에 재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자극히 우호적인 내용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새여수신문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로 된 저술의 광고를 광고금지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게재함으로써 경고결정을 받았다.

제4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기사와 관련,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결정을 내린 대상 기사는 의도적으로 특정후보를 부각시킨, 판세분석과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내용, 그리고 제목과 사진 등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것 등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와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자의 칼럼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위반기사들 가운데 의도성이 높고 정도가 심한 것은 경고문게재를 결정했으며, 이어 경고와 주의 순으로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한 기사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총 위반건수 53건 가운데 특정후보 인물부각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관련이 11건, 칼럼게재가 10건, 그리고 상업광고게재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을 보도유형별로 다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15건, 인터뷰가 7건, 판세분석이 4건, 사진이 3건, 제목이 2건이었다.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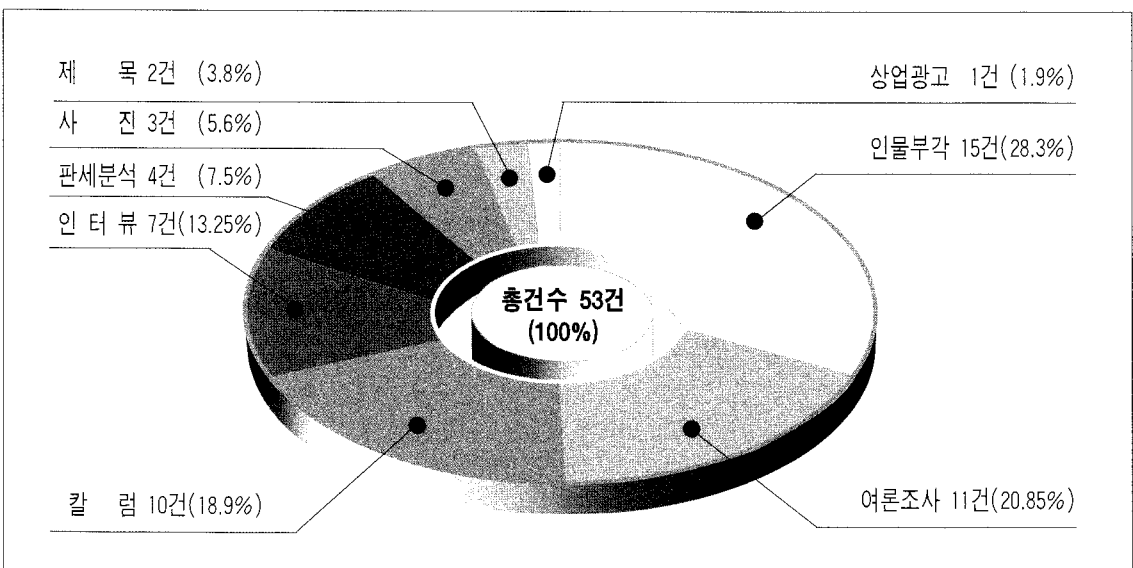
1. 공정성 및 형평성

가. 인물 부각

선거기사심의에서 가장 많은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대상자들을 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정도가 심한 언론사

위반유형별 분포도

<도표 2>



의 경우 특정인물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며칠 연속으로 집중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중앙일간신문보다 지역일간신문이나 지역주간신문들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기사가 많았다. 중앙일간신문 가운데서는 매일경제가 유일하게 인물부각 기사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지인 월간중앙도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기사로 경고결정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는 4월 8일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예정자의 저술 발간과 관련한 소개 기사를 보도했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역일간신문인 남도일보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예정자인 박광태 현 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인 박준영 현 지사를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사항 및 정치적 의지 등을 4월 21일, 4월 26일, 그리고 4월 27일자에 사진과 함께 집중적으로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아시아일보는 2월 14일자 2면에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제하로, 경기도 성남시장선거의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 가운데 현 시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재임 중 치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부각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폄하 보도했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예측보도하기도 해 비교적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발간되는 지역주간신문인 종로저널은 2월 13일자에서 후보예정자인 남상해 하림각 대표의 책 출간과 관련한 출판기념회 소식을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5면에 3개의 박스 기사를 통해 출판기념회 이모저모와 축하내용, 약·경력, 그리고 살아온 내용을 토대로 한 연재물을 게재해 역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상일보는 2월 28일자 6면에 『“학수고대하던 학위반자 울컥”』 제하로, 울산시장에 재출마하는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의 행정학박사학위 취득소식을 전하면서 학위취득의 동기와 취득과정에서의 고충 및 논문의 주요내용 등을 부각하는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게재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신문인 양천신문은 5월 8일자에서 현 구청장으로 구청장선거에 재출마하는 추재엽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 소식을 1면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함과 아울러 2면에는 이례적으로 이 후보예정자의 무소속 출마의지를 밝히는 선언문 전문을 게재,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히 위반하여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기도민일보는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동향과 활동상황, 주요 공약사항 등을 4월 26일, 5월 16일, 5월 24일 사흘에 걸쳐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3월호에서 『하림각 회장 남상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제하로, 종로구청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남상해씨를 다룬 인터뷰형식의 특집 기사를 5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면서 그의 유년시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경험담과 향후 계획 등을 홍보성이 농후하게 집중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나. 인터뷰

정당공천을 전후해 많은 매체들이 후보나 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 정치적 의지, 비전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을 취하는 기사들도 있었으나, 의도적인 차원에서 특정인물부각을 위해 게재한 단발성의 인터뷰기사들이 대부분 제재결정을 받았다. 모두 7건 가운데 중앙일간지로는 무료일간지인 데일리존이 2건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지역일간지들이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즘은 2월 13일자 28면에서 『글로벌감각 탁월한 ‘여의도 켄틀맨’』 제하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예정자인 박 진 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를 두 컷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그의 학·경력과 출마의 변 등을 부각시켜 소개했다. 해당 신문은 박 후보예정자가 영국의 블레어 총리, 클린턴 전 美 대통령과 옥스포드대학 동창이라는 점, 외무고시 차 연소 합격경력, 서울시장 후보예정자로서의 장점 등 지나치게 우호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 전주에서 발행되는 전민일보는 2월 23일자에서 전북 익산시장 후보예정자인 채규정 현 익산시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6면에 게재, 재임 중 시장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진행상황과 각종 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시장계획, 출마의 변 등을 집중 소개했다. 이 기사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없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내용이 후보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이고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일보는 3월 9일자와 3월 30일자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전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전주시장을 사퇴하는 김완주 시장과, 역시 전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무주군수직을 사퇴하는 김세웅 군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및 군수 재임시 역점사업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과 출마의 변 등을 대형 인물사진과 함께 홍보성이 농후하게 보도해 각각 주의결정을 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발행되는 항도신문은 4월 28일자에서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예정자인 정종득 현 시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와이드인터뷰 형식으로 5면에 대대적으로 소개, 시장 추진현황과 주요 공약사항, 그리고 선거전략 등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경고결정을 받았다.

다. 판세분석

선거관련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다른 유형의 기사들보다 그 중요성에서 비중이 높다.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판세분석기사가 유동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택할 후보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대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 당사자들은 신문 등에서 보도하는 판세분석의 추이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를테면 의도가 개입된 판세분석 기사를 부추기는 노력들을 한다.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 보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우리 언론사들의 판세분석 보도행태는 대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난다. 후보들 간의 우열, 즉 누가 얼마나 앞서고 누가 얼마나 처졌느냐 하는 식이 대부분으로, 2과전이니 양강구도니 하는 두 후보위주로 보도하거나, 특정후보 독주니 하며 한 후보를 부각시키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 후보들간 ‘우세·열세’ 외에 ‘경합·혼전·접전’, 나아가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흥미위주의 보도도 곧잘 등장한다. 유동층 유권자들은 이런 보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럴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결정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한 판세분석 기사가 많았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반 유형상 여론조사관련 위반과 겹치는 사례들도 두어 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들은 모두 4건으로, 중앙일간지 한 곳과 지역일간지 세 곳에서 경고 2건, 주의 2건의 결정을 받았다.

판세분석 기사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일신문은 2월 8일자 『광주·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정서 분석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아 당내 경선결과가 본선결과로 이어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이 판세분석 기사는 불투명한 지역정서와 출처가 모호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인위적으로 선거 구도를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의결정을 받았다.

아시아일보는 2월 15일자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장선거와 관련, 후보예정자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민주당의 강운태, 박광태 두 후보예정자의 우위가 뚜렷하다면서 같은 당 두 후보예정자간 양강구도의 선거판세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전주매일은 열린우리당 김완주 전주시장의 전북도지사 출마선언과 관련한 기사를 1, 2, 3면에 각 게재하면서 『김완주 시장 고른 지지 속 1위 달려』 제하로 김시장의 독주 및 당선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 같은 판세분석의 근거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내용을 인용했는데,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인용,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 관련사항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라. 제 목

기사문에서 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기사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대충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목이다. 이러한 특성상 때로는 기사 내용보다 과장 내지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기사에서의 제목은 민감한 것일 수밖에 없고 과급효과 또한 엄청나다. 정당이나 후보, 후보예정자들은 제목 한 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례가 많고 편파시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기사 자체심의회에서 제목이 공정성에 위반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2건이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7건,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5건에 비해 줄었다.

두 건 모두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에서 나왔다. 두 건 모두 특정인물을 부각시키는 것들로, 2월 3일자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맹형규 후보예정자가 부상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예정자의 유일한 상대가 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이란 제목으로 3면에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3월 29일자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간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역시 맹형규 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켰다. 여론조사결과 맹 후보예정자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요지의 기사를 『“차기서울시장은 맹형규” - 51.6%』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관련 위반으로 무거운 조치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마. 사 진

선거관련기사에서 사진의 불공정사례는 한 지면의 기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쓴다든가, 한 기사 속에서 특정 후

보예정자들의 사진만 편향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뷰 시리즈기사에서 특정인물 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작게 게재하는 것 등이다.

이번 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 것은 3건이었고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사진으로 특정정당과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사례로 지적된 신문은 대구신문이었다. 대구신문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면에 박스기사로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고정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의 활동 동향만을 담은 사진을 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 여타 정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경고결정을 받았다.

울산매일도 5월 20일자 3면에 울산 및 울주군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활동상황을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위주로 편집,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한 지면에 특정후보의 사진을 여러 컷 게재해 불공정한 사례로 조치를 받은 신문은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서울일보였다.

서울일보는 5월 16일자 20면에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박주원 후보의 약력과 출마의 변, 주요 공약 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무려 5컷의 박 후보 사진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2. 여론조사

선거기사의 여론조사관련 위반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대부분인 10건,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이 1건이었다. 이 중 강도가 높은 결정인 경고문게재가 2건, 경고가 4건, 주의가 5건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이전 선거법규정(선거기간)보다 줄어들어 공표 가능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 막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표본오차율 등을 적시하지 않아 보도요건 미비로 지적된 위반 건수도 많았다.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기사의 여론조사보도는 반드시 공표 준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표본오차율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보도 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으로 표본오차율을 포함,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정해 심의했다.

여론조사관련 위반사례 중 중앙일간지는 모두 4건으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각각 1건, 그리고 내일신문에서 2건이었다.

한국일보는 1월 31일자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제하의 관세분석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우세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내용을 분석,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선거 하루 전인 5월 30일 서울·부산·충남·광주 등 4개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를 보도한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를 어겨 경고결정을 받았다.

내일신문은 2월 8일과 2월 13일자에서 각각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선거관세 및 서울시장선거의 한나라당 예비대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인용과 보도요건 미

비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주의결정을 받았다.

지역일간신문인 아시아일보는 2월 3일자 2면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일꾼은 누구?』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시장선거와 관련, 정당 및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 지지도에 대해 실시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대엽 현 시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선거판세를 분석·보도하여 비교적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보도요건 중 매우 중요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는 3월 29일자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제하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맹형규 전 의원이 51.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으나, 표본오차율 등 보도요건을 미비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맹 후보예정자를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함으로써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3. 칼럼게재 제한

칼럼게재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이번 선거기사 자체심 의에서는 모두 10건이 지적되었다. 위반사례는 지역일간신문이 5건, 지역주간신문이 5건이었으며, 중앙일간신문은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위반에 대해 경고결정이 7건, 주의결정이 3건 내려졌다.

두 차례 경고결정을 받은 신문은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와 지역주간신문인 종로신문으로, 시민일보는 3월 17일자와 3월 21일자에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그리고 3월 27일자에 같은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각 1회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종로신문은 3월 10일자와 3월 22일자, 그리고 3월 29일자에 한나라당 종로구청장 후보예정자인 남상해 하림각 대표의 기명칼럼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박진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각각 경고결정을 받았다.

거창신문은 2월 20일자 9면에 경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김태호 현 지사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지사님 힘내세요!』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전북일보는 열린우리당 전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김완주 현 전주시장의 기명칼럼을 3월 2일자 18면에 게재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4. 상업광고 제한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상업광고는 새여수신문 1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난 제17대 총선 때는 상업광고제한을 위반한 기사는 모두 3건이었다.

순천시민의신문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 명의의 저술인 『박주선과 호남 - 시련에서 영광으로』에 대한 상업광고를 광고금지기간인 3월 13일 1면에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